

**2021 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배포해드린 서식의 1 페이지 노란색 부분만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문의 참조은세무회계 02-3453-9649~51

- 목차

1. 기본사항 입력

2. 인적공제내용 입력

3. 각종소득 · 세액공제내용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입력사례

사례 1.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의료비 및 교육비 사용액과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공제받는 경우

사례 2.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

사례 3. 근로자 본인이 한부모가정의 부모인 경우(배우자와 사별, 이혼가정 등)

사례 4. 부녀자공제를 받는 경우_근로자 본인이 미혼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례 5. 부녀자공제를 받는 경우_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사례 6.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 기본사항 입력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개정 2021. 10. 28.> (9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세대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세대주 <input type="checkbox"/> 세대원	국적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인적공제 동일 <input type="checkbox"/> 변동	분납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input type="checkbox"/> 120% <input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021.12.31현재 세대주여부, 국적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무처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근무기간, 감면기간, 거주구분, 거주지국, 인적공제항목 변동 여부, 분납신청여부, 원천징수세액선택

관계자	성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임의	자료	보령료	의료비	교육비
내·국					국세청 기타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 본인)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2. 인적공제내용 입력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 국민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자료 구분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보장성	일반	난립	65세이상 장애인 간병비 수당수령자	실손의료 보험료	일반	장애인
0	(근로자 본인)	○				국세청계 기타 계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인적공제 항목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아래의 내용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 2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의 관계코드 및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기본공제 란에 "O"를 입력합니다.(관계코드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2.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공제를 받을 경우 관계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기본공제 란에 "X"를 입력합니다.
3. 근로자 본인이 한부모 가정의 부모인 경우 한부모 란에 "O"를 입력합니다.
4. 근로자 본인이 여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녀자란에 "O"를 입력합니다.
5.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유형별로 장애인란에 장애코드를 입력합니다.

3. 각종소득 · 세액공제내용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개정 2021. 10. 28.> (9쪽 중 제1쪽)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연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 ·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국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분납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100%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 · 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료	실손의료보험료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계										
0						기타 계										
(근로자 본인)						국세청										
-						기타										
-						국세청										
-						기타										
-						국세청										
-						기타										

각종 소득 · 세액 공제 항목									
자료구분	기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직통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금액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각종 소득 · 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제출하시는 소득공제자료상 금액을 연말정산업체에서 입력해 드리기 때문에 신고서에는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엔 소득공제자료 업로드시 요청사항 입력란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착오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의료비공제를 받는 경우
2.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공제를 받는 경우
3.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공제를 받는 경우
4.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 및 형제, 자매의 기부금공제를 받는 경우

4.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입력사례(1)

사례1.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의료비 및 교육비 사용액과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공제받는 경우

1) 공제상세내역

구분	이름	주민번호	특이사항
근로자 본인	김철수	730101-1111111	
직계존속(부)	김민식	420101-1111111	
직계존속(모)	황정음	450101-2222222	
배우자	이영이	750101-2222222	
자녀	김행복	990101-1111111	대학재학중인 자녀이며, 2021.12.31현재 만 22세로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음.

2) 신고서 작성화면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개정 2021. 10. 28.> (9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730101-1111111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세대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세대주 <input type="checkbox"/> 세대원	국적	한국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년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변동	분납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input type="checkbox"/> 120% <input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상충특례자	실손의료보합금	일반	장애인
0	김철수 (근로자 본인)	<input type="radio"/>				국세청계 기타 계										
1	김민식 420101-1111111	<input type="radio"/>				국세청 기타										
1	황정음 450101-2222222	<input type="radio"/>				국세청 기타										
3	이영이 750101-2222222	<input type="radio"/>				국세청 기타										
4	김행복 990101-11111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세청 기타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코드(4)를 입력하고 기본공제란에는 "X"를 입력합니다.

소득공제자료 업로드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를 받겠다는 내용을 입력해주셔야 착오없이 반영이 가능합니다.(다음페이지)

3) 소득공제자료 업로드시 요청사항 기재화면

 11111112 | 김철수 [로그아웃](#)

자료업로드

폴더

- 기본자료 0

[추가 폴더 만들기](#)

기본자료

요청사항(수정요청사항)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남겨주세요!)

자녀 김행복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사용액 공제는 받길 원하며 해당자료 첨부하였습니다.

파일 리스트

[찾아보기...](#)

[제출하기](#)

4.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입력사례(2)

사례2.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

1) 공제상세내역

구분	이름	주민번호	특이사항
근로자 본인	김철수	730101-1111111	
직계존속(부)	김민식	420101-1111111	
직계존속(모)	황정음	450101-2222222	
배우자	이영이	750101-2222222	근로소득이 있으므로(총급여 500만원초과)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배우자의 의료비공제를 근로자 본인이 받기로 함

2) 신고서 작성화면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개정 2021. 10. 28.> (9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필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필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730101-1111111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세대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대원	국적	한국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년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변동	분납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input type="checkbox"/> 120% <input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 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간호비 소정금액자	실손의료 보장금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이원수를 적습니다.															
0	김철수 (근로자 본인)	○				국세청계 기타 계									
1	김민식 420101-1111111	○				국세청 기타									
1	황정음 450101-2222222	○				국세청 기타									
3	이영이 750101-2222222			X		국세청 기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코드(3)를 입력하고 기본공제란에는 "X"를 입력합니다.

소득공제자료 업로드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를 받겠다는 내용을 입력해주셔야 착오없이 반영이 가능합니다.(다음페이지)

3) 소득공제자료 업로드시 요청사항 기재화면

 명지대학교

11111112 | 김철수 [로그아웃](#)

자료업로드

폴더

-  [기본자료](#) 0

[추가 폴더 만들기](#)

기본자료

요청사항(수정요청사항)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남겨주세요!)

배우자 이영이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나 의료비공제는 받길 원하며 해당자료 첨부하였습니다.

파일 리스트

[제출하기](#)

4.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입력사례(3)

사례3. 근로자 본인이 한부모가정의 부모인 경우(배우자와 사별, 이혼가정 등)

1) 공제상세내역

구분	이름	주민번호	특이사항
근로자 본인	김철수	730101-1111111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자녀	김행복	010101-3333333	
자녀	김미래	030101-4444444	

2) 신고서 작성화면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개정 2021. 10. 28.> (9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필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필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730101-1111111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국적	한국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분납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100%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립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수급특례자	실수위험 보험료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계										
0	김철수		○			기타										
	(근로자 본인)		○			기타										
4	김행복		○			국세청										
	010101-3333333					기타										
4	김미래		○			국세청										
	030101-4444444					기타										
						국세청										

-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 항목 중 한부모란에 "O"를 입력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면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근로자본인의 인적공제 항목 중 한부모란에만 "O"를 입력하시면 됩니다.(부녀자란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입력사례(4)

사례4. 부녀자공제를 받는 경우_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근로자본인이 미혼)

1) 공제상세내역

구분	이름	주민번호	특이사항
근로자 본인	이영이	750101-2222222	근로자 본인은 미혼으로서 부모님을 봉양 중
직계존속(부)	이율곡	430101-1111111	
직계존속(모)	김순이	460101-2222222	

2) 신고서 작성화면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개정 2021. 10. 28.> (9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이영이	주민등록번호	750101-2222222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국적	한국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분납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100%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실손의료보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계										
0	이영이 (근로자 본인)	○				국세청계										
1	이율곡 430101-1111111		○			국세청계										
1	김순이 460101-2222222		○			국세청계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 항목 중 부녀자란에 "O"를 입력합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 대한 부녀자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 41,470,588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세대주여부 및 소득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입력사례(5)

사례5. 부녀자공제를 받는 경우_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 공제상세내역

구분	이름	주민번호	특이사항
근로자 본인	이영미	750101-2222222	
배우자	김철수	730101-1111111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2) 신고서 작성화면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개정 2021. 10. 28.> (9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이영미	주민등록번호	750101-2222222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세대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세대주 <input type="checkbox"/> 세대원	국적	한국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년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변동	분납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input type="checkbox"/> 120% <input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적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수급특정자	실손의료보합금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계										
	0	이영미 (근로자 본인)	<input type="radio"/>			기타 계										
	3	김철수 730101-11111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세청 기타										

-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항목 중 부녀자란에 "O"를 입력합니다.

-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코드(3)를 기재하시고 기본공제란에는 "X"를 입력합니다.(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대한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 단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대한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 41,470,588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소득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대한 부녀자공제는 세대주요건이 없습니다.)

4.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입력사례(6)

사례6.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 공제상세내역

구분	이름	주민번호	특이사항
근로자 본인	김철수	730101-1111111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임.
직계존속(부)	김민식	420101-1111111	
직계존속(모)	황정음	450101-2222222	
배우자	이영이	750101-2222222	

2) 신고서 작성화면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개정 2021. 10. 28.> (9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750101-2222222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국적	한국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분납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100%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일반	난임	85세이상 장애인 건강관리수당특례자	실손의료보험금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인원수를 적습니다.	항목에 해당하는					국세청계										
0	김철수 (근로자 본인)	○				기타 계										
1	김민식 420101-1111111	○		1		국세청										
1	황정음 450101-2222222	○				기타										
3	이영이 750101-2222222	○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 항목 중 장애인란에 장애유형별 장애인코드를 입력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인코드>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2: 국가유공자등
- 3: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